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릴레이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을 환영한다! 공영방송 MBC는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여성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에도 차별을 두어온 대전MBC에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MBC의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가 작년 6월 인권위에 채용성차별 진정을 접수한 지 약 1년만의 결정이다.

인권위는 유지은 아나운서 등 대전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합당한 이유없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채용하고 임금·연차휴가·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그 고용형태를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 속에, 여성 아나운서들을 (사측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이라고 적시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대전MBC 아나운서의 채용성차별 문제는 성별에 근거하여 특정 성별의 노동자를 불리한 조건의 직무나 직급, 고용형태로 배치하는 '성별분리채용'의 문제를 현직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채용성차별'로 이름지어 공론화한 한국사회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례는 성별분리채용 문제를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고수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한국사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린다.

현재 대전MBC에 채용된 여성 아나운서 중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남성 정규직 2명). 뿐만 아니라 대전MBC는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그간 대전MBC는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용상

성차별이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시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며, 사측이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을 되짚고 있다. 설사 확고한 차별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특정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고 있다면 이를 깨닫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조직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MBC와 MBC본사에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참고: 진정한 중 김** 님은 퇴사함). 이제부터라도 사측은 피해당사자인 유지은 아나운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평등하고 발전적인 논의 테이블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MBC와 MBC본사(서울)은 성차별 채용관행 재발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이와같은 문제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MBC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전MBC를 포함한 지역방송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내용의 공영성 뿐 아니라 조직을 정의롭게 운영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 차별·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된다. 대책 마련 과정에 투명성과 공영성, 성평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노동조합 포함)·언론·여성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 공대위는 향후 MBC가 선언을 넘어 성평등한 채용문화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가 현직 중에도 성차별 고용관행을 용기있게 고발하고, 생계의 불안 속에서도 평등하게 다시 일하고 싶어 버텨온 시간을 돌이켜 본다. 불안과 고립 속에서 지쳐갈 때에도 유지은 아나운서는 이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성평등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견지했다.

이번 대전MBC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피해당사자, 많은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믿어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18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리의 딸들은 채용성차별에 안전한가

"그러니까 딸을 안 낳으려고 그러지." 2020년 6월의 어느 날,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야기 끝에 나온 율조림이었다.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이런 발언은 한국전쟁 직후나, 보릿고개를 넘어야하는 농업위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리는 말 아닌가. 다음 분위기가 가관이었다.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과 상관없이 낮아지는 임금 이야기에 급격히 시무룩해진 그녀들의 분위기는 절망 그 자체였다. "이럴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충원하고, 아이돌보미 같은 사회서비스를 더 확대해가야죠." 라는 외침에 잠시나마 희미한 미소를 띠었을 뿐이다. "여성인권"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어두운 얼굴들은 말하고 있었다.

공영방송인 대전MBC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로 인한 권고안을 받았다. 똑같은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반해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이 되어 차별을 겪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 아나운서들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비정규직 아나운서는 자유로운 해고도 가능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유지는 아나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하나를 뺀 프로그램 모두에서 하차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대전MBC에게 채용성차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진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본사 차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내었다. 이번 사안은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20여 년간 있었다는 성차별 사례다.

최근 선거에서 정의당은 여성할당제를 제안하자 비난을 받았다. 비정규직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에 구명조끼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조차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2019년 한국여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개 언론사 115명 임원 가운데 여성은 4명(3.5%)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뿌리 깊은 성차별과 유리천장의 원인이 여성의 무능력이 아니라는데 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기에, 자연스레 경력단절로, 배제로 이어진다. 2020년의 우리는 속삭이듯 여성의 차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 차별이 없어질 거라 믿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무엇도 자연스럽게 얻어지지는 않는다. 뿌리 깊은 성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잘못하고 있다고 사회가 지적한다면 변해야한다. 그래야 내일의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조건 없는 인권위 권고 수용, 공영방송 대전MBC의 책무다

지난 6월 17일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다. 공영방송이라 자임하던 대전MBC의 책임 있는 모습은 이번에도 볼 수 없다.

50여 쪽에 달하는 인권위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그 동안 채용성차별을 당해왔다고 밝힌 유지은 아나운서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여성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채용성차별 관행이 지속됐음이 확인됐다. 이런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진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유지은 아나운서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부당한 업무배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행사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권고는 이같은 사실에 근거 해 대전MBC를 비롯해 지역 MBC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MBC 본사가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두 번째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 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MBC가 이 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공영방송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그 동안의 채용성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청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행 되어야 한다.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과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인권위가 권고한 이유다.

우리는 대전MBC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에 대해 지역 시청자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하라.
2. 조건 없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라.

2020년 6월 23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라!

대전MBC는 모든 성차별 채용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내부에 관행적 채용 성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 ▲장기간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 ▲MBC 본사와 계열사 내부의 채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MBC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더 이상 여성에 대한 고용 상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적 구조는 변함없이 공고해져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상의 성차별적 관행은 피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아 그냥 관행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아왔다.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의 고용형태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진정은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성차별적 고용형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MBC를 포함한 문화방송 16개 계열사 내부의 성차별 채용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남성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반면, 여성은 프리랜서나 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대전MBC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여성인 것은 대전MBC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전MBC가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아나운서에게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는데 여자는 늘 예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발언은 한 개인이 했을지언정, 대전MBC 내에 공공연한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연 대전MBC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구성원으로서 대우해왔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여성을 동등한 개체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은 여성들을 쉽게 대체가 가능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아넣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안겨준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MBC문화 방송 내,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남성의 비율은 전체 남성 대비 12.2%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 대비 61.1%나 된다. 이는 여성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직군에 대해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MBC를 포함한 MBC문화방송 계열사의 이런 고용형태와 성차별적 관행이 내부에 고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MBC는 더 이상 이러한 성차별 고용 관행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행해져왔던 성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전MBC의 모습으로 거듭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모든 성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소모품 입니까? 채용성차별은 헌법 유린이며 반인권적 행태이다.

대전mbc는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대전mbc가 국가인원위원회의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인정과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가 여성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행태를 저지른 지 1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전mbc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는 대전mbc노조에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마저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마저 거부하는 방송사가 어찌 공영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대전mbc는 공영방송의 자질이 없다고 분명이 밝혀두며 채용성차별의 법위반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반인권행태이며 헌법 유린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헌법에 채용성차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되었다. 헌법을 준수하여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 할 대전mbc가 십 수 년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채용성차별을 자행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국가인권위 결정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mbc의 여성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은 여성을 소모품으로 쓰다버리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여성 아나운서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성격이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보다는 우선 소비하기 좋은 젊은 여성의 필요성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여성아나운서를 소모품처럼 쓰다가 버리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태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가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인정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대전mbc는 유지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즉가 채용하라!

대전mbc는 채용성차별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25일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대전MBC는 성차별채용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MBC의 성차별 채용을 인정했다. 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한 2명의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진정 후 가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권고했다.

대전MBC는 법적 판결 운운하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성차별 채용에 대해 사과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다하는 것이다. 언론노조 대전mbc지부 또한 성명을 통하여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제 사측의 결단만 남았다.

2016년 박근혜 적폐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항쟁 이후, 적폐세력의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언론노조 대전mbc지부의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하여 낙하산 사장을 내쫓고 처음으로 대전mbc 출신의 사장이 선임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평화, 종교단체들과 시청자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연대가 함께 이어졌다. 대전mbc 사측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성차별 채용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전지역의 제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성차별 채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법적 판결 운운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부터 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판결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에게 성차별 채용 관행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측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이미 인권위 제소를 한 당사자들은 제소를 이유로 2차 가해를 당했다. 한 당사자는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옮겼으며, 다른 한 당사자는 어려움 속에서 현장에서 계속하여 노동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것은 3차, 4차 가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언론노조 대전mbc지부와 그리고 지역의 노동조합들의 이름으로 대전mbc 사측에 요구한다. 즉각 피해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2020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대전 MBC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대전 MBC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2019년 6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국가인권위에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에 얻은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전 MBC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기에,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1990년대 이후 대전 MBC에 채용된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만 채용되었다. 사측에서는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였고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된 것은 오랜 기간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지속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이들을 원하는 기간만 사용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를 하는 여성 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1.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여성 아나운서 2인의 정규직 전환, 3. 인권위 진정에 따른 불이익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전 MBC는 앞으로 성별 채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지만, 정규직 전환과 위로금 지급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대전 MBC의 태도는 노동자를 구석으로 몰아가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길 기다리는 전형적인 기업형 탄압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버티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무색하게 방송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공고히 하는 빌미를 주는 일이다.

2020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성차별적 채용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대전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를 뒤흔기며 내세우고자 한다면 더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29일

대전 녹색당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라! 모든 방송사는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MBC가 여성아나운서에 대한 고용형태가 성차별이었음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전MBC 여성아나운서들이 진정을 접수한지 1년 만이다. 그러나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행해왔던 채용 성차별을 사과하지는 못할지언정 문제를 외면하는 대전MBC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대전MBC는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리에는 남성이 채용되었다. 이를 통해 대전MBC는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설사 대전MB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였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전MBC의 관리감독을 받아왔음에도,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왔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이다. 그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대전MBC 내 채용 성차별이 ‘관행’으로 고착화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려는 MBC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대전MBC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여성아나운서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했고, 이를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숨겼다.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대전MBC는 여성아나운서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상에서 성차별을 자행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이행하라.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전하는 바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를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채용 성차별 문제는 비단 대전MBC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간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채용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방송사는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후 내부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외친 여성 아나운서들이 있었기에 대전MBC 채용 성차별이 밝혀질 수 있었다. 술한 노동현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하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여성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6월 30일

대전여민회

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전MBC에 권고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 채용에 잣대를 들이밀고 고용 불평등을 초래한 대전MBC는 반성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남성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성차별적인 행태가 지역 공영방송인 대전MBC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이러한 언론이 사회 각종 이슈들을 보도한다면 대전 시민 누가 믿고 방송을 볼 수 있겠는가. 스스로 떳떳하길 바랄 뿐이다.

채용성차별을 받은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대전MBC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이다.

업무의 내용과 양이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복지와 급여에 차이를 둔 것은 단순 손익을 떠나 인간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폭력이다.

국가인권위는 대전MBC의 관행을 명백한 차별행위라 못 박았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대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전MBC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만이 오명을 씻을 수 있다.

대전MBC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20년 7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인권 존중 공영방송의 책무다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하라

지난 2016년 우리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대전MBC 구성원들과 함께 했다.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구성원들을 지지했다. 끝없는 신뢰 추락과 존재감을 상실한 공영방송 대전MBC의 정상화는 언론적폐 청산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재 대전MBC가 지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역민들이 바랐던 공영방송 대전MBC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30여 년 간 이어진 채용성차별이라는 노동인권엔 반하는 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진정 조사 결과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채용성차별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대전MBC 뿐만 아니라 16개 지역MBC 역시 채용성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 한 두 아나운서들은 임금과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했다.

대전MBC는 채용성차별 뿐만 아니라 채용성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두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해 부당한 업무배제를 자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당사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했다. 인권위는 대전MBC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명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대전MBC는 지난 6월 17일 인권위 권고 결정문이 통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전MBC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 같은 모습이 대전MBC의 참 모습이라면 지역민들은 대전MBC를 공영방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대전MBC는 지역 방송의 자격이 없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조차 망각한 대전MBC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전MBC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잘못된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공영방송의 길을 택할 것인지, 정당한 노동권을 짓밟는 적폐 방송의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는 변화된 사회적 가치이자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기준이다. 조건 없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전MBC는 지역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채용성차별 철폐와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

2020년 7월 2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여성 아나운서는 ‘꽃’이 아니라, 노동자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전MBC 노동자는 평등하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일부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피진정 방송사(대전MBC)의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성차별’ 행위를 더 이상 ‘관행’이란 명분으로 숨길 수 없다. 대전MBC 채용 성차별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임금노동자의 41.5%가 비정규직으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 26.3%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 차이는 남녀 임금 차이로도 이어진다. 2016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100대 36이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와 남성 아나운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전MBC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급여, 복리후생 등 처우는 동일하지 않았고, 여성 아나운서는 불이익을 받았다. 여성은 비정규직이고, 남성은 정규직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불이익을 가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8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전 MBC는 대전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목소리 낸 이에게 ‘명예훼손’을 들먹이고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전MBC의 인식 수준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이것이야말로 대전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전MBC 시청자게시판에는 ‘불평등한 고용 관계를 개선할 것, 유지는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피해자와 대전 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글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차별을 ‘관행’으로 치부하는 옛날 옛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오로지 대전MBC 뿐이다.

대전MBC가 말하는 '관행'은 '여성 아나운서는 젊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여성 아나운서를 용역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랜 시간, 차별을 당한 한 여성아나운서가 낸 목소리다. 차별을 가한 쪽은 그저 '관행'이라 말하지만, 차별을 당한 사람은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차별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 아나운서가 '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은 관행이 아니다. 젊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동시에,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문제'다. 여성 아나운서는 '꽃'이 아니라, 노동자다.

대전M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사에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나이든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 아나운서' 구도만을 정상적인 구도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우리는 방송에서 나이 든 여성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나아가 안경 쓴 여성 아나운서, 화장하지 않은 여성 아나운서가 '이슈'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2020년 7월 6일

사단법인 대전여민회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그간의 성차별적 채용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이 진정을 접수한지 1년여 만에 대전MBC의 고용행태가 성차별이었음을 인정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대전MBC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이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은 계약직과 프리랜서 형태로만 20명을 뽑는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행태는 일반 회사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명백한 고용상의 성차별인데 하물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언론사에서 20년 이상 이러한 성차별이 버젓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전MBC 사측에서는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고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인 정규직 전환과 그 외 권고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대전MBC 사측의 관리감독을 받았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정규직 전환의 자격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전MBC를 비롯한 지역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성차별적인 고용이 이뤄진 것도 놀랍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진정에 대해 해당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권고 외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 마련, 진정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주주인 문화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와 지역 계열사의 채용현황 파악과 유사사례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네 가지 권고안을 내렸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권고안은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리적인 권고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MBC는 네 가지의 권고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지역 여론을 선도하고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언론사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한다면 향후 과연 어느 지역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수용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14년 동안 번번이 입법 장벽에 가로막혔던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채용상의 차별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항목 중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오래 지속되며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일 것이다. 그럼에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을 버젓이 자행한 언론기관 대전MBC는 그간의 행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진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복대책은 물론 즉각적인 차별방지 방안을 세우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대전충남인권연대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채용관행 대전 MBC를 규탄한다! 대전MBC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

공영방송사인 대전MBC가 성차별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대전MBC 구성원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및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싸웠던 촛불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이런 대전MBC의 반노동, 반인권적 태도에 시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7일, 대전MBC가 성차별 채용 관행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2명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MBC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인권위의 권고에 유감을 표하고 시간을 끌어 사법적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여성 아나운서 2인은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한 입사전형을 거쳐 입사했고, 방송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MBC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없이 여성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MBC의 성차별 채용관행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서 인권위도 이런 행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명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대전MBC는 인권위 진정 이후 해당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 하차라는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단행했다. 대전MBC가 사법적 판단까지 받겠다고 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부분에서도 업무나 근무환경 및 시간, 보도국의 지휘·감독 등을 종합했을 때 대전MBC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대전MBC의 태도는 공영방송사의 노동인권 수준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지역중심 공동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대전MBC 홈페이지의 인사말에 있는 문구다.

대전MBC는 지금 선택해야만 한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과오를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방송사라는 오점을 남기고 적폐방송의 길을 걸을 것인지 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시대착오적 반노동, 반인권, 성차별 채용관행과 반성없는 태도로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없다.

대전MBC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이것이 공영방송 대전MBC가 지역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임을 잊지 말라.

2020년 7월 13일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대전MBC는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아나운서 채용시 '성별'을 이유로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 역시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향후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해당 진정을 제기한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진정 후 가해진 부당업무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지급까지 권고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 달 째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문에는 51페이지에 걸쳐 4개의 관련 판례가 근거로 나오는 등 강력한 인권위 권고에는 이미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 법적 논란이 전혀 없는 대전MBC의 명백한 과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인권위의 판단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무시하고 사법적 판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발의 및 논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 역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년의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앵커의 조합으로 상징되는 뉴스룸 구도를 탈피하고, 여성앵커가 안경을 쓰는 것조차 조명이 되는 등 우리 언론 현장의 성역할에 대한 감수성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진실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MBC는 정녕 2020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언론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권위의 판단에 여전히 미온적인 대전MBC의 모습에 우리는 진실로 분노한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요, 대한민국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대전MBC는 성차별채용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대전MBC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례 없이 자사출신 사장을 배출한 방송사임을 잊었는가? 유지은 아나운서는 진정 대전MBC의 남이란 말인가? 대전MBC는 이제 닫았던 눈과 귀를 열고 속히 결단하라. 우리의 소중한 동료에게 가한 부당한 조치들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인권위의 모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2020년 7월 13일

MBC아나운서협회, SBS아나운서협회, OBS아나운서협회, tbs아나운서협회, CBS아나운서협회, 극동방송아나운서협회, 가톨릭평화방송아나운서협회, bbs아나운서협회, jtbc아나운서협회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에 대해 지난 6월 17일 다음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500만원을 각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전MBC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남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맺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방식에 예외는 없었다.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다시 말 해
여성 아나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정규직-남성 아나운서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을 지원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또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있다.
불리한 고용계약에 성별 이외의 이유는 없었다. 방송국 측의 주장대로 차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 방식은 성차별적이었다.

지난 7월 9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사들은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MBC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진이 지적한대로
공영방송인 MBC가 성차별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고 있다.

대전MBC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시청자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방송’이 되겠노라 대외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차별적 관행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법적 다툼 소지가 존재한다’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대전MBC가 시청자와 함께 생각하겠다는 미래는 무엇인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청자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묵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변화이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송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을 지역 사회에 알린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빚을 졌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청자는
오랫동안 방송국 내부의 성차별적 행태를 모르고 기만당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외칠 것이다. 대전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라. 지금이라도 성차별 채용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보복성 인사조치 및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 대전MBC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계약직/프리랜서로 채용된
여성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2020년 7월 14일

여성인권티움